제283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정관표준안,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2018. 9. 10.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I 개정의 필요성

○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정관표준안」에 따라 정관을 정비하고,「서울 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조례 제6845호, 2018.3.22. 개정), (조례 제6877호, 2018.5.3.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관을 개정 하고자 함

Ⅲ 주요 내용

- □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정관표준안」에 따라 정관을 정비
 - 비상임이사 연임시 임원추천위원회 심의생략 근거 신설(안 제11조)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라 비상임이사의 연임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 생략근거를 정관에 신설함
 - 중요한 사항의 이사회 의결정족수 강화 신설(안 제28조)
 - 공사 사업계획 기본방침, 예산 및 결산, 정관의 변경,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1/2에서 2/3로 강화함
 - 정관변경 전 시의회 보고사항 명문화(안 제38조)
 -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정관 표준안」에 따라 정관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함
- □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조례 제6845호,2018.3.22. 개정), (조례 제6877호, 2018.5.3. 개정)〕사항 반영
 -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3조 제2항)
 - 이사회 구성시 특정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사항을 반영함
 - 기금 조성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안 제34조의2)
 -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 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을 반영함

Ⅲ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현 행	개 정
제 11 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이사의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이사의임기와 관계없이 근로자이사의임기도 당연히종료되며 근로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발생시 법령, 조례및 이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영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제 11 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비상임이사가 연임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임원의 연임은 임원의 임명권자가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영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④근로자이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이사의 임기는 종료되며, 근로자이사의 결원 발생 시 법령, 조례 및 이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제 23 조 (설치 및 구성)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 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 한다. ③~④(생략)	제 23 조 (설치 및 구성)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④(현행과 같음)
제 28 조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u> <u>부결된 것으로 본다.</u> ②(생략)	제 28 조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4조제1호부터 제 4호까지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신 설〉	제34조의2 (기금 조성 등) 공사는 사업의 운영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 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38조 (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을 변경 하려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 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부 칙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주택도시공사정관 제 호

서울주택도시공사정관 중 개정안

서울주택도시공사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 11 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비상임이사가 연임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②임원의 연임은 임원의 임명권자가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③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영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 ④근로자이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이사의 임기는 종료되며, 근로자이사의 결원 발생 시 법령, 조례 및 이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하여 야 한다.
- (5)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제23조제2항을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로 한다.
- 제28조제1항 중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다만, 제24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기금 조성 등) 공사는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8조 중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